

# 부정청탁금지법

2018년 1월 17일부터  
이렇게 달라졌습니다.



국민권익위원회 [www.acrc.go.kr](http://www.acrc.go.kr)



국민신문고  
[www.epeople.go.kr](http://www.epeople.go.kr)

국민콜 110  
정부민원안내



# 부정청탁금지법,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

##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!

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의례,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·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.

	기존	변경
 <b>경조사비</b> 축의금·조의금	10만원	<b>5만원</b> 화환·조화 10만원

경조사비를 내려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.

 <b>선물</b> 금전,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	5만원	<b>5만원</b> 농수산물·가공품* 10만원
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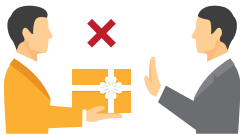
 <b>음식물</b>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 등	3만원	<b>3만원</b> 기존과 같음
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\* 농수산물, 농수산물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·재료의 50% 넘게 사용하여 가공)은 10만원까지 가능  
(농수산물,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, 임산물도 포함)

### 주의하세요!

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.

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!



- 예를 들어,
- 인허가 신청인
  - 지도·단속 대상자
  - 입찰 상대방
  - 인사·평가, 감사대상자
  - 고소·고발인, 피의자 등

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


※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(예시)

-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
-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
-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
- 상급 공직자가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
-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

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**합산하여 10만원까지** 가능하지만,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.



농수산물 선물 + 그 외 선물  
5만원 5만원

농수산물 선물 + 그 외 선물  
3만원 7만원

부조 목적으로 축의금·조의금과 화환·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**합산하여 10만원까지** 가능하지만,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.



축의금·조의금 5만원 + 화환·조화 5만원  
축의금·조의금 3만원 + 화환·조화 7만원

축의금·조의금 7만원 + 화환·조화 3만원